

RESEARCH ARTICLE

# Interpretation of “For the First Time” in the the Addenda Regarding the Timeframe of Application of the Treble Damages System: Focusing on the Patent Court Decision No. 2023Na11276 (the Hongsan Gyeonggeumseok case)

Chaho Jung<sup>1</sup>, XueQiong Zhang<sup>2</sup>

<sup>1</sup>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Republic of Korea

<sup>2</sup>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XueQiong Zhang ([zhangxq37@hotmail.com](mailto:zhangxq37@hotmail.com))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Patent Court Decision No. 2023Na11276 (the “Hongsan Gyeonggeumseok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the applicable timeframe for the treble damages system introduced by the 2019 amendment to the Patent Act. Article 3 of the Addenda to Act No. 16208 stipulates that the enhanced damages system shall apply to infringing acts that occur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Act. Previous case law has assigned legal significance to the phrase “for the first time,” holding that the treble damages system does not apply to a single, continuous act of infringement that commenced before the effective date. However, the decision in question interpreted “for the first time” as if it were nonexistent, thereby permitting the enhanced damages system to apply even to infringement that began prior to the effective date but continued thereafter.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validity of that interpretation. By reviewing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enhanced damages system and evaluat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phrase “for the first time,”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ive approach. Under the principle that a statutory language should be given meaning, the default approach should be to interpret “for the first time” as having meaning. Only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indicating that such an interpretation is undesirable should it be permissible to treat “for the first time” as if it were nonexist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urt’s decision neglects both the legislative history surrounding the inclusion of “for the first time” in the Patent Act and the necessity for this phrase, thereby committing an error in interpreting the term as if it were nonexistent. It is hoped that this analysi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for the first time” in various other statutes as well.

## Open Access

Received: March 18, 2025

Revised: April 17, 2025

Accepted: May 30, 2025

Published: June 30, 2025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5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KEYWORDS

Patent Infringement, Intentional Infringement, Enhanced Damages, For the First Time, Statute Interpretation.

원저

## '3배 증액제도'의 적용시기에 관한 부칙에서의 '최초로'의 해석: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홍산경금속 사건)을 중심으로

정차호<sup>1</sup>, 장설경<sup>2</sup>

<sup>1</sup>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up>2</sup>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교신저자: 장설경 (zhangxq37@hotmail.com)

### 차례

#### 1. 서론

#### 2.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홍산경금속 대 HC컴퍼니 사건)

##### 2.1. 2019년 특허법 개정 및 규정

##### 2.2. 사실관계

##### 2.3. 쟁점

##### 2.4. '최초로'의 두 가지 해석방법

#### 3. 해석 2('최초로' 무시)의 논거 분석

##### 3.1. 김성기 기고문

##### 3.2.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대상 판결)

##### 3.3. 손영언 발표자료

##### 3.4. 해석 2를 지지하는 논거의 정리

##### 3.5. 해석 1이 타당함에 대한 설명 및 해석 2 논거에 대한 반박

#### 4. 다른 법의 부칙에서 '최초로'를 해석한 사례

##### 4.1.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한 사례

##### 4.2.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 4.3. 소결

#### 5. 증액제도 또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이력

##### 5.1. 민법 차원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의 실패

##### 5.2. 하도급법 등에서의 증액제도의 도입

##### 5.3. 하도급법 개정이력

##### 5.4. 특허법 개정이력

##### 5.5. 특허법 부칙 제3조에서의 '최초로'의 해석

#### 6.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손해배상액 3배 증액제도의 적용시기를 중심으로,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홍산경금속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 제16208호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증액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판례에서는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여, 시행일 전부터 계속된 단일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증액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최초로’라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시행일 전부터 계속된 침해행위에도 증액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그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증액제도의 입법이력 및 ‘최초로’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이해한 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을 제시한다. 의미부여의 원칙에 따라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기본(default) 원칙으로 하고, 그 해석이 바람직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최초로’를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은 특허법에 ‘최초로’가 추가된 입법이력 및 그 용어가 필요한 이유를 간과하고 동 용어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이 많은 다른 법에 포함된 ‘최초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특허권 침해, 고의침해, 증액손해배상, 최초로, 법령해석

## 1. 서론

20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액 3배 증액제도가 드디어 도입되었다.<sup>1)2)3)</sup> 동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동 증액제도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sup>4)</sup> 그 ‘최초로’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들 및 한 개의 특허법원 판결이 그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한 바 있다.<sup>5)</sup> 그런데, 특허법원 2023나 11276 판결(‘대상 판결’)이 그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해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그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는 여러 다른 법률들에도 도입되었고(아래 V. 참조), 그 법률들 중 상당수가 ‘최초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 판결의 해석은 다른 법률들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 된다.

### <용어정리: ‘징벌적 배상제도’가 아닌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먼저, 본 논문은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이 규정하는 제도를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또는 줄여서 ‘증액제도’라고 칭한다. 증액의 최대치가 3배인 경우에는 ‘3배 증액제도’가 될 것이며, 5배인 경우에는 ‘5배 증액제도’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바가 있으나,<sup>6)</sup> 동 용어는 해당 제도의 내용이 ‘징벌적’임을 전제로 하고, 가치판단이 부여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법에서의 증액제도의 성격이 항상 징벌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으므로,<sup>7)</sup> 가치중립적인 증액제도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3배 증액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대만(지구)<sup>8)</sup> 및 구(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되기 전) 우리나라이며, 5배 증액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현(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된 후) 우리나라이며, 6배 증액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이다.<sup>9)10)</sup>

- 1) 특허법에 증액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2005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배대현, “특허법상 懲罰的 損害賠償額 制度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2005), 217-249면. 다만, 대상 논문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29면)는 결론을 내렸다.
- 2) 정차호·주지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특허법에서의 도입 필요성”, 『성공관법학』, 제24권 제3호(2012), 763-803면.
- 3) 저작권법에 3배 증액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02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윤선희,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편),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2002), 71-83면.
- 4) 구 특허법 부칙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5) 아래 II. 4. 참조.
- 6) 권인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법학논총』, 제27호(2012), 27-43면; 윤기승,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2014), 225-272면 등.
- 7) Ryan Crockett, “Balancing Burdens for Accused Infringers: How In Re Seagate Got It Right”, *DePaul Law Review*, Vol.58 No.4(2009), p. 1051 (“Since the courts were given discretion to enhance damages in 1836, courts have awarded enhanced damages for either a remedial or punitive purpose, or a combination of both.”).
- 8) 1994년 특허법에서 2배 증액제도를 도입한 대만(지구)은 200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2배 증액제도’를 ‘3배 증액제도’로 변경하였다. 周金城·吳俊彥, “論專利法之懲罰性賠償”, 『月旦法學雜誌』, 第118期(2005), 111면.
- 9) 중국은 지재권법 분야에서는 상표법에서만 2103년부터 증액제도를 운영하다가 2020년 민법전에서 지식재산권 증액(징벌적)손해배상의 일반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특허법, 저작권법에서도 증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吳江东, “知识产权懲罰性賠償的私法基础与司法适用”, 『法学评论』, 总第227期(2021), 22-23면; 朱理, “专利侵权懲罰性賠償制度的司法适用政策”, 『知识产权』, 第8期(2020), 24면.
- 10) 중국의 경우, 특허법 제71조가 “손해배상액은 전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손해액에 5배를 더할 수 있는 것(500% 증액)으로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6배 증액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案件适用懲罰性賠償的解释》第三条.

## 2.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홍산경금속 대 HC컴퍼니 사건)

### 2.1. 2019년 특허법 개정 및 규정

특허법에서의 3배 증액제도는 법률 제16208호로 2019. 1. 8. 국회를 통과하였다.<sup>11)</sup> 해당 개정법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개정법은 2019. 7. 18.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부칙 제3조는 증액제도에 관한 제128조 제8항 및 9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법률 제16208호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2.2. 사실관계

#### 2.2.1. 원고 및 피고

원고(홍산경금속)는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특허등록번호 제 10-1117219호의 조리용기용 뚜껑’에 대한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피고(HC컴퍼니)는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2.2.2. 청구항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청구항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뚜껑몸체의 가운데 부분에는 손잡이가 구비되고, 가장자리에는 조리용기의 상면에 밀착되는 패킹이 구비된 조리용기용 뚜껑에 있어서, 상기 패킹의 상측에는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측면을 감싸는 돌출부가 형성되어, 상기 돌출부가 고정부재에 의하여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측면에 밀착 고정되되, 상기 고정부재는 상기 돌출부와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상면을 감싸는 형태를 가지도록 단면상 “ㄱ”자 형상으로 형성되어서, 그 (일면)측면을 가압하여 발생된 오목부에 의해서 상기 패킹의 돌출부를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측면으로 밀착하여 고정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용기용 뚜껑(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 2.2.3. 관련 사건 이력

원고(특허권자)는 부산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2023가합42160 사건), (피고의 특허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특허권 침해 및 나아가 ‘고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 2.2.4. 기초손해액 산정

원고는 침해자 이익에 근거한 기초손해액 산정을 청구하였다. 피고제품의 2015년 11월 30일

11) 참고로, 5배 증액제도는 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되었고, 2024. 8. 21.부터 시행되었다.

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총 판매수량은 411,168개, 매출액은 약 501억원이었다. 특허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한계이익율 7.6%를 인정하였다. 국제청이 고시한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이 92.4%이므로, 그 수치에 따른 이익율은 7.6%이며, 한계이익율이 그 이익율보다는 높은 것이 상식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7.6%를 한계이익율로 인정한 것이다.<sup>12)</sup> 그러므로, 침해자 이익액은 약 38억원이 된다(50,180,066,900원 × 7.6%). 그 후 법원은 “전체 물건에서 특허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sup>13)</sup> 기여율(기여도)을 20%로 책정하였다. 기여율을 적용한 후의 침해자 이익액은 약 7.6억원이 된다(3,813,685,084원 × 20%).

### 2.2.5. 고의침해 인정

특허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체로서 오랫동안 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인지하였다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 ③ 특허권 침해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이 발송되었다는 점, ④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패소 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 ⑤ 피고측 변리사가 작성한 특허무효 의견서는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고의침해를 인정하였다.

### 2.3. 쟁점

시행일 전에 침해행위가 끝난 경우에 증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또, 시행일 후에 침해행위가 최초로 시작된 경우에 증액제도가 적용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의 침해행위는 대상 시행일(2019. 7. 9.) 전인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되어, 시행일 후인 2022. 10. 31.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시행일 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증액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이다. 시행일 전에 침해행위가 시작되어 시행일 후까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시행일 후의 침해행위에 대해 개정 증액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달리 말하면, 위 부칙 제3조에 포함된 ‘최초로’의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 2.4. ‘최초로’의 두 가지 해석방법

위 부칙 제3조에서의 ‘최초로’의 의미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 1은 ‘최초로’를 특별히 둔 취지를 살려서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증액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해석 1을 적용한 사례로는 특허법원 2023나10938 판결(노바티스 대 동국제약 사건)<sup>14)</sup> 및 여러 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sup>15)</sup> 예시된다. 이러한 판결들에서, 법원은 시행일 전부터

12) 판결문, 14면.

13) 판결문, 15면.

14) 노바티스 v. 동국제약 사건,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 14면(“따라서 구 특허법 제 128조 제8항은 이 법 시행일인 2019. 7. 9.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인 2013. 3. 14. 최초로 발생하여 마지막 생산 시점인 2021. 2.경까지 피고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가 2019. 7.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72215 판결,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42835 판결, 2022. 5. 13. 선고 2019가합548175 판결, 2023. 6. 22. 선고 2020가합605272 판결,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921 판결, 2023. 9. 15. 선고 2021가합551723 판결, 2023. 9. 22. 선고 2021가합513165 판결, 2023. 12. 7. 선고 2021가합533152 판결, 2024. 4. 19. 선고 2021가합586569 판결, 2024. 5. 24. 선고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행일 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증액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16)</sup>

해석 2는 시행일 전의 침해행위에는 개정 증액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행일 후의 침해행위에는 개정 증액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석 2를 적용한 사례가 대상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다. 특허법원은 시행일 후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증액제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후,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중 침해자 이익액은 약 87백만원에 해당한다(87,927,040원(= 2019. 7. 9.부터 2022. 10. 31.까지의 매출액 합계 5,784,673,744원 × 한계이익률 7.6%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여율 20%)고 산정하였다.<sup>17)</sup> 필자는 해석 1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sup>18)</sup> 이 글에서는 그 주장을 견지하면서 논거를 더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 3. 해석 2(‘최초로’ 무시)의 논거 분석

해석 2를 지지하는 사례는 ① 김성기 기고문,<sup>19)20)</sup> ② 대상 판결 및 ③ 손영언 발표자료가<sup>21)22)</sup> 존재하며, 이하에서는 그 3 문건에서 제시된 주장을 취합, 정리한다.

#### 3.1. 김성기 기고문

##### 3.1.1. 신뢰이익 불인정

해석 1에 따르면, (시행일 전부터) 더 장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가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보호할 신뢰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sup>23)24)</sup>

- 
- 2021가합507566 판결, 2024. 8. 23. 선고 2022가합529273 판결(본 판결들을 검색하고, 한국특허법학회 2024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에서 공유하여 주신 손영언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13165 판결 등.
- 17) 판결문, 42면.
- 18) 정차호,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3배에서 5배로 강화」, 지식재산뉴스, 2024. 4. 23자.
- 19) 김성기,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 부산지법 2023가합42160 판결을 보고」, 지식재산뉴스, 2024. 5. 8자(이하, ‘김성기 기고문’),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key=%B1%E8%BC%BA%B1%E2&x=21&y=16&section=86&category=88&no=6119>>.
- 20) 김성기 변리사는 2024년 당시 특허법인 광장리엔고에 속하였고, 그 전에는 김연장, 특허청 등에서 근무하였다.
- 21) 손영언, “2024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2025. 2. 22.)”, 발표자료, 한국특허법학회(2025), 49-61면.
- 22)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년 당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이었으며, 그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부, 특허법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 23) “만일 3배 증액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침해에 대하여는 전체 침해에 대해 가중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침해행위를 하고 있던 침해자에게 법률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특허침해가 불법행위인 것은 손해배상 증액 전후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데, 법 시행 후에 침해를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책임을 가중하고, 법 시행 전부터 시작하여 더 오랜 기간, 더 자주 침해한 자에게는 가중 책임을 면탈하여 주는 것이 된다. 이처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불법행위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 24) 김성기 2025년 기고문에서도 동일한 논거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김성기,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쟁점: 적용시점과 증액배수, 기여도---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 지식재산뉴스 2025. 2. 7자, 대한변리사회(“징벌적 배상법 이전에 시작되어 이후까지 침해행위를 계속한 행위자에게 증액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지켜 주어야 할 신뢰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법 시행일 이전부터 침해행위를 하여 더 오래, 더 자주 침해한 불법행위자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을 지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용하는 나라의 유사한 판례도 제시하였다. 필자는 홍산경금속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판결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 3.1.2. 침해행위를 개별로 파악

‘최초로’라는 용어는 특허권 침해행위를 “포괄적 행위 단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판매, 수입, 양도 등 각각의 행위별로 최초로 행하여진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즉 특허[권]침해에 따른 책임의 행위별 개별발생 법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된다.”

### 3.1.3. 5배 규정에서 ‘최초로’ 삭제

5배 증액제도를 도입한 개정법의 부칙에서는 개별발생 원리를 다시 반복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최초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sup>25)</sup>

## 3.2.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대상 판결)

### 3.2.1. 부칙 제3조의 취지

해당 부칙 제3조는 “침해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 3.2.2. 해석 1은 포괄일죄 법리와 상충

대상 판결은 포괄일죄의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시한 후, 해석 1은 그러한 포괄일죄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3.2.3. 법 시행 후에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

해당 부칙 제3조는 “증액배상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증액배상 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④를 명시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증액배상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최초로’라는 용어를 부가하였다는 것이다.

### 3.2.4. 해석 1의 이유 없음

해석 1로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3.2.5. 해석 1은 사리에 맞지 않음

장기간 침해로 위법성이 더 큰 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sup>26)</sup>

25) “이처럼 3배 가중에서 밝힌 개별발생 원리를 5배 가중 규정에서 다시 반복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므로 5배 배상 규정의 부칙에는 ‘최초로’를 강조하지 않은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6) 판결문 37면(“증액배상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침해행위를 시작한 자에 대하여는 증액배상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부터 침해행위를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것은 위법성이 큰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는 증액배상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익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론이다.”).

### 3.2.6. 해석 1은 불합리한 결과 초래

해석 1에 따르면, 원고가 시행일 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고의침해를 주장하는 장면에서, 피고가 시행일 전의 침해행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여 증액배상의 적용을 면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sup>27)</sup>

## 3.3. 손영언 발표자료

### 3.3.1. 해석 1은 침해행위를 개별행위로 보는 법리와 충돌

해석 1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날마다 새로 발생하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는 기존 법리(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등 취지 참조)와 부합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한다.

### 3.3.2. 시행일 전부터 침해자의 신뢰이익 불인정

시행일 전에 이미 침해행위를 하고 있던 자에게 신뢰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기간이 더 긴 침해자를 우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 3.3.3.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 초래

해석 1은 원고가 소송물을 시행일 후의 행위로 특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행일 전의 행위를 스스로 주장하게 되는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3.3.4. 증액제도 도입의 취지

증액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3.3.5. 그 후에는 '최초로'라는 용어를 삭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5배 증액제도를 규정하는 특허법은 모두 부칙에서 '최초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sup>28)</sup>

## 3.4. 해석 2를 지지하는 논거의 정리

위에서 소개한 해석 2를 지지하는 논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7) 판결문 37면 각주 8)("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론 ①을 취할 경우, 원고가 증액배상 규정 시행 이후 기간의 침해행위만을 특정하여 증액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가 시행 후 최초 침해가 아니라는 점(시행 전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침해행위를 피고 스스로 침해행위라고 주장함으로써 증액배상의 적용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28) 상표법 부칙(법률 제17531호, 2020. 10. 20.) 제2조; 디자인보호법 부칙(법률 제17526호, 2020. 10. 20.) 제2조; 특허법 부칙(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제2조.

번호	내용	주장자
논거 1	○ 신뢰이익 불인정 - 장기간 침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는 합리적이지 않음	김성기 기고문 (1) 대상 판결 (5) 손영언 발표자료 (2)
논거 2	○ 침해행위를 개별로 파악 - 제조, 판매 등 행위별 개별발생 원리를 밝힌 것 - 해석 1은 포괄일죄 법리와 상충 - 해석 1은 침해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	김성기 기고문 (2) 대상 판결 (2) 손영언 발표자료 (1)
논거 3	○ 5배 규정, 상표법 등에서 ‘최초로’ 삭제 - 개별발생 원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음	김성기 기고문 (3) 손영언 발표자료 (5)
논거 4	○ 부칙 제3조의 취지 - 부칙 제3조는 침해에 따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 증액제도 도입의 취지	대상 판결 (1) 손영언 발표자료 (4)
논거 5	○ 부칙 제3조의 ‘최초로’는 시행일 후 행위만 규율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대상 판결 (3)
논거 6	○ 해석 1의 이유가 없음	대상 판결 (4)
논거 7	○ 해석 1은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원고가 시행일 후 행위만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행일 전 행위를 침해로 주장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 초래	대상 판결 (6) 손영언 발표자료 (3)

### 3.5. 해석 1이 타당함에 대한 설명 및 해석 2 논거에 대한 반박

이하에서는 해석 1이 타당함에 대해 설명하고, 해석 2가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자 한다.

#### 3.5.1. 해석 2의 논거 1, 4 및 7에 대한 반박

번호	내용	주장자
논거 1	○ 신뢰이익 불인정 - 장기간 침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는 합리적이지 않음	김성기 기고문 (1) 대상 판결 (5) 손영언 발표자료 (2)
논거 4	○ 부칙 제3조의 취지 - 부칙 제3조는 침해에 따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 증액제도 도입의 취지	대상 판결 (1) 손영언 발표자료 (4)
논거 7	○ 해석 1은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원고가 시행일 후 행위만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행일 전 행위를 침해로 주장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 초래	대상 판결 (6) 손영언 발표자료 (3)

##### 3.5.1.1. ‘최초로’는 증액제도 또는 소위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의 결과물

증액제도는 사회적 약자, 소비자, 중소기업 등을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sup>29)30)</sup>

29)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78호(2018), 441면(“과거 미국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력이 있는 개인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적용시켜왔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해 적용범위의 확장을 해나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30) 황정미·최준선,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2012), 638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까닭이 대기업의 과도한 불법행위를 예방, 적발하여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논의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증액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강자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특허법에 증액제도를 개정하는 논의에서도 유명한 기업 및 저명한 교수가 증액제도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하였다.<sup>31)</sup> 국회는 합의의 도출을 위하여 그러한 반대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필자는 반대의견을 반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최초로’라는 용어가 삽입되었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최초로’라는 용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간 침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최초로’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이다.

**3.5.1.2. 증액제도는 특허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최초로’는 억제장치로 둔 것임**

대상 판결 및 손영언 발표자료는 부칙 제3조가 침해에 따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나,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증액제도 그 자체가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질 뿐이며, 부칙 제1조는 단순히 시행일을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일종의 억제장치로 구태여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증액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이미 행해진 제품, 출시된 제품에 대하여는 증액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구태여 추가된 것이다.

**3.5.2. 논거 6에 대한 해명**

번호	내용	주장자
논거 6	○ 해석 1의 이유가 없음	대상 판결 (4)

대상 판결은 해석 1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실시하였다. 그런데, 증액제도를 반대하는 측, 특히 대기업으로서는 ‘최초로’를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를 가진다. 대기업은 지금까지는 하도급법, 특허법 등의 위반 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 법적 리스크를 평가한 후, 경영판단을 하여 왔다. 그런데 증액제도가 적용되면, 단순히 위반 또는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증액제도가 시행일 후의 모든 행위, 제품에 (그 행위, 제품이 시행일 전부터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된다면 기존에 계속되어 오던 모든 행위, 제품에 대하여 고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업(특히, 법무팀, 특허팀)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증액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면서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기존에 계속되어 오던 행위, 제품에는 새로운 증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로’를 둠으로 인해, 새로운 행위, 제품에 대하여만 고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증액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초로’로 인하여 장기간 침해자를 더 우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증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최초로’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액제도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측의 협상, 절충의 결과가 ‘최초로’임을 이해하게 되면, ‘최초로’를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1) 그 유명한 기업의 특허팀 팀장이었던 자는 (필자도 참석한) 한 공식 회의에서 “한국 특허는 쓰레기가 많은데, 그 특허들에 3배 증액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필자의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

### 3.5.3. 논거 2 및 논거 5에 대한 해명

번호	내용	주장자
논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행위를 개별로 파악</li> <li>- 제조, 판매 등 행위별 개별발생 원리를 밝힌 것</li> <li>- 해석 1은 포괄일죄 법리와 상충</li> <li>- 해석 1은 침해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li> </ul>	김성기 기고문 (2) 대상 판결 (2) 손영언 발표자료 (1)
논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 제3조의 ‘최초로’는 시행일 후 행위만 규율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li> </ul>	대상 판결 (3)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증액제도를 도입한 여러 법에서의 부칙은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달리 말하면, 국회는 아래 표가 보여주는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선택지 A는 일반적 부칙과 동일하게 “공포 후 X개월 후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선택지 B는 그러한 일반적 부칙 외에 “시행일 후 행위에만 개정법이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이다.

<부칙에서의 시행일 규정의 3가지 선택지>

구분	선택지 A	선택지 B	선택지 C
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부칙 1조 =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부칙 2조 = 시행일 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부칙 1조 =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부칙 2조 = 시행일 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의미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부칙</li> <li>○ 시행일 전 행위에는 구 법만 적용 = 신법 적용치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지 B = 선택지 A</li> <li>○ 부칙 2조는 부칙 1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지 C = 선택지 B?</li> <li>○ 선택지 C가 ‘최초로’라는 한정어를 굳이 둔 취지를 살려 선택지 B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야 함</li> </ul>

그런데, 확립된 침해행위의 개별발생 원리에 따르면, 선택지 B의 규정은 선택지 A의 규정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다. 선택지 B는 단지 개별발생 원리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선택지 A 부칙의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이견이 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명확화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달리 말하면 선택지 B의 부칙 제2조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선택지 C는 “시행일 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성기 기고문, 대상 판결, 손영언 발표자료가 주장한 해석 2에 따르면, 선택지 C의 내용은 선택지 B 및 선택지 A의 내용과 차이가 없게 된다.

선택지 C는 특별히 ‘최초로’라는 용어를 두는 것인데, 존재하는 용어를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 2는 타당하지 않으며, ‘최초로’라는 한정어를 굳이 둔 취지를 살려 선택지 B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최초로’라는 용어가 입법 당시의 증액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다른 법의 부칙에서 ‘최초로’를 해석한 사례

다른 법의 부칙에서 ‘최초로’를 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그 사례들 중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한 사례도 있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그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4.1.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한 사례

### 4.1.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3진아웃’ 제도<sup>32)</sup>

국회는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에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개정법의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2001. 6. 30.)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규정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조문의 위치만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로 바뀌어 존재하였고, 도로교통법 부칙(2005. 5. 31 법률 제7545호) 제3조는 위 도로교통법 부칙(2001. 1. 26. 법률 제6392호) 제2조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은 “2001. 6. 30.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2001. 6. 30.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은 소위 ‘음주운전3진아웃’제도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이다.<sup>33)</sup> 시행일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자의 이력은 그 3진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시행일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자의 위법성이 시행일 후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자의 위법성보다 더 강하므로 전자를 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3진아웃 제도가 매우 강력한 것이므로, 동 제도가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특허법에 적용하면, 3배 증액제도가 매우 강력한 것이므로, 동 제도가 시행일 전부터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지속되어 온 행위에<sup>34)</sup>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1.2. 진폐예방방법 사례<sup>35)</sup>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개정 진폐예방방법의 부칙 제2조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 아래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2010. 10. 5. 진폐진단을 받았으나, 개정 진폐예방방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1. 2. 24.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진폐진단은 시행일 전에 받았고, 진폐장애등급은 시행일 후에 결정되었다. 원고는 시행일 전에 진폐진단을 받았으므로 두 규정(제24조 및 제25조)이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진폐진단은 시행일 전에 받았으나, 진폐장애등급은 시행일 후에 결정되었으므로, 그 결정으로 인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한 후, 따라서 피고에게 개정

32)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누33007 판결.

33) 김영오, “음주운전억제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2호(2012), 224면(“셋째, 음주운전삼진 몰수제(삼진아웃제)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13165 판결(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허법 부칙(2019. 1. 8. 법률 제16208호) 제3조는 ‘제12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2019. 7. 9.부터 시행되었다. 위 특허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19. 7. 9.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27.부터 2020. 9.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2019. 7. 9.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32559 판결.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어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달리 말하면, 시행 일 전에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되었다면, 그 후에도 유사한 등급이 결정되는지와 무관하게 개정 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최초로’가 의미를 가지는 부칙의 사례라고 생각된다.

## 4.2.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 4.2.1.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해석: 마약류관리법<sup>36)</sup>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한다. 2019. 12. 3.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의 초일불산입으로 2020. 12. 4. 0시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에서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여 투약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는 시행 후 위반하여 투약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그 투약이 생애 최초인 사람이라야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적용하고, 재판 대상 투약범죄들 중 일부가 그 전이라도 적용한다. ‘최초로’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시행일 전에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는 위 규정을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초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그 ‘최초로’는 실수로 삽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2.2.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보호법의 법제처 해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보호법’)의 부칙(제15692호, 2018. 6. 12.)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sup>37)</sup> 및 제8조의3의<sup>38)</sup>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한 민원인이 위 부칙 제2조의 ‘최초로’의 의미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먼저 두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조정·중재의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민·형사상 소송절차는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을 밝힌 후,<sup>39)</sup>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은 같은 법 시행 후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새롭게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기술을 사용했다라도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행해진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이 있다면 그 사용을 통해 새로운 침해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1517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7)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38)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39) 의안번호 제201014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2018. 5.) 참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S7J1W1I1B3D1G4D3G5B4R1D9O6O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S7J1W1I1B3D1G4D3G5B4R1D9O6O6)>, 검색일: 2025. 3. 6.).

다.<sup>40)</sup> 이러한 해석은 결과적으로는 ‘최초로’라는 용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및 그 용어가 실수로 삽입된 것이라는 점을 말한다.

### 4.3. 소결

여러 법의 부칙에서 ‘최초로’를 둔 사례가 발견된다. 그 ‘최초로’는 ① 실수로 삽입되었으므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들과 ② 입법자가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두었으므로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들로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특허법에서의 해당 부칙 제3조의 ‘최초로’는 위 ① 유형인가, 아니면 ② 유형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증액제도 도입의 입법이력을 살필 필요가 있다.

## 5. 증액제도 또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이력

### 5.1. 민법 차원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의 실패

민법에 증액제도를 도입하자는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고,<sup>41)</sup> 본격적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2003. 2. 25. - 2008. 2. 24.)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및 후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강한 반대,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의 사유로 도입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sup>42)</sup> 민법은 온갖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기본법인데, 민법에 증액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증액제도가 어울리지 않는 사건에서도 증액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민법에서의 증액제도 도입은 지나치게 과감한,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 5.2. 하도급법 등에서의 증액제도의 도입

민법 차원에서의 증액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증액제도 도입이 특히 필요한 개별 법에서의 독자적 도입이 시도되었다. 그러한 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법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증액제도가 도입되었다.<sup>43)</sup> 그 후 몇 개의 법에서도 증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한 다른 법에서의 증액제도 도입이 특허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래 표는 하도급법 등 여러 법에서의 개정시기 및 관련 부칙을 정리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증액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하도급법의 개정이력은 특히 중요하다.

40)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076&rowidx=81](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076&rowidx=81)>, 검색일: 2025. 3. 6.

41) 윤기택·류근홍,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청대학술논집」, 제10편(2007), 73면.

42)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민사법학」, 제50호(2010), 241면.

43) 증액제도와 유사한 기존 제도의 사례: 황정미·최준선, 앞의 논문, 628면(“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소비자기본법, 철도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유사한 개념을 두고 있다.”).

<증액제도를 도입한 사례의 비교>

도입시기	법명 약칭	부칙 규정
2012. 5. 30. 등	하도급법 최초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3. 5. 28.	하도급법 <sup>44)</sup>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2015. 3. 11.	신용정보법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 부터 적용”
2017. 4. 18.	제조물책임법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
2019. 1. 8.	특허법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2019. 3. 19.	독점규제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법 적용
2021. 12. 7.	대리점거래법	“법 시행 이후 공급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

### 5.3. 하도급법 개정이력

하도급법에 증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상정되었고, 그 여러 건을 대체, 통합하는 정무위원장의 대안이 제시되었으며(2013. 4. 30., 의안번호 1904735), 그 대안이 법으로 통과되었다. 그 여러 건의 초기 개정안은 진영의원, 오제세의원, 노웅래의원, 이목희의원, 전병헌의원, 이상직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들이다.<sup>45)</sup> 예를 들어, 진영의원 개정안은 10배 증액제도 및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sup>46)</sup> 오제세의원 개정안은 3배 증액제도 및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sup>47)</sup> 상기 정무위원장 대안의 최초 개정안은 부칙 제1조만 두는 것이었으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검토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부칙 제2조가 규정된 것이다.

<하도급법 최초 개정안 및 실제 규정의 비교>

최초 개정안	수정의견 → 실제 규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하도급법은 2024년 일부 행위(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5배 증액제도를 도입하였고(법률 제20366호), 그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법률 11842호, 신설 2013. 5. 28.>.  
 45) 정무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201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13K0Q4P0G9D1N8T0Z5W0O9X0J8Z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13K0Q4P0G9D1N8T0Z5W0O9X0J8Z6)>, 검색일: 2025. 3. 6.  
 46) 진영의원 등 3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20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I2F0M5A3L0H1A0H2H3D1N9B8B3U2](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I2F0M5A3L0H1A0H2H3D1N9B8B3U2)>, 검색일: 2025. 3. 6.  
 47) 오제세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20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2H0A6Y0Q81Y1H3F1C3I2D1Z8T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2H0A6Y0Q81Y1H3F1C3I2D1Z8T6)>, 검색일: 2025. 3. 6.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5.4. 특허법 개정이력

오세정의원, 원혜영의원, 홍의락의원이 각각 특허법에 증액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원혜영의원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48)</sup> 오세정의원 개정안은 “시행 후에 침해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49)</sup> 또, 홍의락의원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50)</sup> 주목할 점은 오세정의원 개정안은 ‘최초로’라는 용어를 두고 있지 않았다. 원혜영의원 개정안 및 홍의락의원 개정안은 하도급법 등에 이미 ‘최초로’라는 용어가 삽입된 점을 감안하여 특허법에도 동일한 용어를 두고 있는데, 오세정의원 개정안은 그 ‘최초로’가 필요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그 용어를 두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그 3가지 개정안들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의안 번호 제17085호)으로 제시하였다. 그 대안에서의 내용이 3배 증액제도 및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부칙 제3조).

#### 5.5. 특허법 부칙 제3조에서의 ‘최초로’의 해석

부칙이 규정하는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해석은 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② ‘최초로’가 실수로 삽입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이해된다. 증액제도를 도입하는 여러 법의 입법이력에 따르면 ‘최초로’가 실수로 삽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액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강한 찬성과 강한 반대의 결과물이다. 그 제도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실수로 ‘최초로’를 삽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상 판결에서는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III.5.(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최초로’를 두는 것이 대기업 법무팀, 특허팀에게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최초로’가 꼭 필요했던 것이다.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기간의 침해자가 더 우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최초로’를 삽입하여, 증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반대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입법자의 의도, 입법이력에 따라 ‘최초로’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6. 결론

#### <법에 존재하는 단어인 ‘최초로’에 의미를 부여해야 함>

법령해석의 원칙 중 존재하는 단어를 없애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부여의 원칙’이라고 칭한다.<sup>51)</sup>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러한 의미부여의 원칙이

48) 원혜영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Q7F0Q8W2C9M1E7OON7S1V2I5N1M0](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Q7F0Q8W2C9M1E7OON7S1V2I5N1M0)>, 검색일: 2025. 3. 5.

49) 오세정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7D0E7P1V1A1B4M4L4L2K0O9N4V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7D0E7P1V1A1B4M4L4L2K0O9N4V7)>, 검색일: 2025. 3. 5.

50) 홍의락의원 등 10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D8E0U6G2U1N1W0F3N2J0V9W2M0T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D8E0U6G2U1N1W0F3N2J0V9W2M0T7)>, 검색일: 2025. 3. 5.

51) 정차호, “미국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예측불가능한 게임”,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2호(2008), 28면

법령해석의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52)</sup> 법령에 존재하는 용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표현,<sup>53)</sup> 입법부가 어떤 용어를 실수로 두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sup>54)</sup> 어떤 존재하는 용어가 필요치 않은(superfluous)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sup>55)</sup> 그러한 원칙이 기본원칙(canon)이라는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입법의도를 관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애초 그 용어가 삽입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실수로 삽입된 경우, 그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그런데, 증액제도에서의 ‘최초로’는 위에서 살펴본 입법이력에 따르면, 무심코 또는 실수로 삽입된 것이 아니다. 동 제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삽입된 용어이다.

### <입법이력이 최초로에 의미부여를 요구함>

국회가 어떤 특별한 용어를 특별히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없다. 의미부여의 원칙에 따라, 굳이 특별히 추가한 ‘최초로’라는 용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특허법에서도 그 용어로 인하여 약간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은 그 용어를 선호하였으며, 그 선호의 결과 및 국회의 결단에 따라 법을 해석해야 한다. 특히, 무심코 삽입된 용어가 아니라, 최초 개정안에는 없던 용어를 구태여 새로이 삽입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 용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하도급법 등 여러 법에 같이 삽입된 ‘최초로’를 모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작용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필자는 현대 한국 특허법에서 매우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도입된 가장 중요한 3가지 제도가 ① 관할집중제도, ②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③ 증액제이라고 평가한다.<sup>56)</sup> 달리 말하면, 증액제도는 무심코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장기간의 강한 반대를 뚫고 도입된 제도에서 최초 개정안에 없던 용어인 ‘최초로’가 입법과정에서 특별히 삽입되었다면 그 용어에 강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대상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최초로’가 존재하여야 할 의미를 알지 못

(“쟁점이 되는 용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용어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통, 출원인이 어떤 용어를 청구항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용어가 무언가를 의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52) Robert M. Bernstein, “Abandoning the Use of Abstract Formulations in Interpreting Rluipa’s Substantial Burden Provision in Religious Land Use Cases”, *Th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Vol.36 No.2(2013), p. 297 (“That is, to adhere to the canon of statutory construction requiring that each word in a statute should be endowed with meaning ...”).

53) James W. McNeilly Jr. & David P. Leibowitz, “Withdrawals from Tax-Deferred Retirement Accounts: Included in Current Monthly Income?”,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Journal*, Vol.27(2008), p. 59 (“Similarly, a court must give meaning to each word in a statute and, if at all possible, not construe a statute so as to render some words or phrases meaningless or superfluous. *TRW Inc. v. Andrews*, 534 U.S. 19, 31, 122 S.Ct. 441, 151 L.Ed.2d 339 (2001).”).

54) Jordan S. Lipp, “I Am Not My Brother’s Keeper: A Brief History of Georgia’s Apportionment Statute and the Future of Tort Reform”, *Mercer Law Review*, Vol.74 No.2(2023), p. 660 (“The rule against surplusage is a can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that directs courts to assign meaning to each word in a statut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egislature intended every word it wrote and that no words were inserted accidentally.”).

55) Michael Herz, ““Data, Views, or Arguments”: A Ruminantion”,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Vol.22 No.2(2013), p. 355 (“A familiar canon of construction holds that each word in a statute has a distinct meaning and none is superfluous.”).

56) 참고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특허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이 허가특허연계제도 및 증액제도이었다. “한-미 FTA 특허법 분야 대응방안”과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필자는 증액제도는 수용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반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막판협상의 결과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도입하고, 증액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도입을 주장하는 그때(2012년)는 반대하였으나, 약 7년 후 우리나라는 증액제도를 스스로 도입하였다.

한 채, 그 특별히 의도적으로 추가된 용어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최초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1이 입법의도와 법문의 명확성을 반영한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해당 ‘최초로’를 일반의미 및 명확의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법령에 포함된 용어에는 그 용어의 일반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 원칙을 ‘일반의미 원칙’이라고 칭한다. 이 일반의미 원칙은 법령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sup>57)</sup> 일반의미(ordinary meaning) 해석으로 인하여 보통사람(ordinary people)이 어떤 법령용어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sup>58)</sup> 참고로, 특허실무에서는 해당 용어의 배심원에게 이해되는 ‘일반의미’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해되는 ‘기술의미’가 다를 수 있어서 법령해석 및 청구항 해석에 주의가 요망된다.<sup>59)</sup>

법령용어의 해석원칙의 하나로 ‘명확의미(plain meaning) 원칙’이 있다. 해당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다른 고려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sup>60)</sup>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확의미 원칙이 다른 원칙을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cardinal) 것이라고 실시한 바 있다.<sup>61)</sup>

####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행위(단일·계속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특허법원 2023나10938 판결(노바티스 대 동국제약 사건)<sup>62)</sup> 및 여러 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들이<sup>63)</sup> 시행일 전부터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행일 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증액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핸드폰 갤럭시 S10 모델이 증액제도 시행일(2019년 7월 18일) 전인 2019년 3월 8일에 최초로 출시되었다. 삼성전자가 그 동일모델을 시행일 후에도 계속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시행일 전부터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판단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 후 S20 모델을 2020. 3. 6. 출시하였는데, 그 S20 모델의 생산, 판매는 S10 모델의 생산, 판매와는 단일하지 않고 단절된 행위로 판단될 것이다.

57) Marco Basile, “Ordinary Meaning and Plain Meaning”, *Virginia Law Review*, Vol.110(2024), p. 136 (“The ordinary meaning canon: assume statutory terms bear their ‘ordinary meaning’ unless the context indicates otherwise. 1 The canon is regularly described as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58) Kevin P. Tobia, “Testing Ordinary Meaning”, *Harvard Law Review*, Vol.134 No.2(2020), p. 737 (“Legal interpretation that reflects ordinary meaning also promotes reliance values, fostering coordination and helping ordinary people manage their expectations.”).

59) Kevin Tobia et al., “Ordinary Meaning and Ordinary Peopl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71 No. 2(2023), p. 375 (“Ordinary Meaning vs. Technical Meaning”).

60) Marco Basile, supra at 137 (2024) (“The plain meaning rule: if the statutory text’s meaning is ‘plain’ (as in clear), then a court must enforce that meaning regardless of other considerations.”).

61)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Connecticut Nat. Bank v. Germain*, 503 U.S. 249 (1992).

62) 노바티스 v. 동국제약 사건,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 14면(“따라서 구 특허법 제 128조 제8항은 이 법 시행일인 2019. 7. 9.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인 2013. 3. 14. 최초로 발생하여 마지막 생산 시점인 2021. 2.경까지 피고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가 2019. 7.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72215 판결,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42835 판결, 2022. 5. 13. 선고 2019가합548175 판결, 2023. 6. 22. 선고 2020가합605272 판결,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921 판결, 2023. 9. 15. 선고 2021가합551723 판결, 2023. 9. 22. 선고 2021가합513165 판결, 2023. 12. 7. 선고 2021가합533152 판결, 2024. 4. 19. 선고 2021가합586569 판결, 2024. 5. 24. 선고 2021가합507566 판결, 2024. 8. 23. 선고 2022가합529273 판결(본 판결들을 검색하고, 한국특허법학회 2024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에서 공유하여 주신 손영언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모델은 2016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제2세대 모델이라고 칭하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제3세대 모델이라고 칭한다.<sup>64)</sup> 제2세대 모델은 시행일 전에 최초로 생산, 판매되었으므로, 그 제2세대 모델의 시행일 후의 생산, 판매 행위에도 증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3세대 모델의 생산, 판매는 제2세대 모델로부터의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동차 회사는 매년 외관 일부를 변경한다. 그러므로, 제2세대 기간 중에서도 사사로운 디자인 변경 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사로운 변경은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의 범위 내로 인정될 것이다. 다만, 해당 모델이 많이 변경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올뉴(all new) 제네시스”라는 표현을 광고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표현으로 인하여 단일·계속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64) 위키백과, “제네시스”,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84%A4%EC%8B%9C%EC%8A%A4\\_G80](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84%A4%EC%8B%9C%EC%8A%A4_G80)>, 검색일: 2025. 3. 10.

## 참고문헌

### 단행본(국내 및 동양)

윤선희,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편),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학술지(국내 및 동양)

권인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법학논총」, 제27호(2012).

김영오, “음주운전억제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2호(2012).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민사법학」, 제50호(2010).

배대현, “특허법상 懲罰的 損害賠償額 制度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2005).

윤기승,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2014).

윤기택·류근홍,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청대학술논집」, 제10편(2007).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78호(2018).

정차호, “미국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예측불가능한 게임”,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2호(2008).

정차호·주지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특허법예외의 도입 필요성”,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2012).

황정미·최준선,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2012).

周金城·吳俊彦, “論專利法之懲罰性賠償”, 「月旦法學雜誌」, 第118期(2005).

吴汉东, “知识产权惩罚性赔偿的私法基础与司法适用”, 「法学评论」, 总第227期(2021).

朱理, “专利侵权惩罚性赔偿制度的司法适用政策”, 「知识产权」, 第8期(2020).

### 학술지(서양)

James W. McNeilly Jr. & David P. Leibowitz, “Withdrawals from Tax-Deferred Retirement Accounts: Included in Current Monthly Income?”,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Journal*, Vol.27(2008).

Jordan S. Lipp, “I Am Not My Brother’s Keeper: A Brief History of Georgia’s Apportionment Statute and the Future of Tort Reform”, *Mercer Law Review*, Vol. 74 No.2(2023).

Kevin P. Tobia, “Testing Ordinary Meaning”, *Harvard Law Review*, Vol. 134 No.2(2020).

Kevin Tobia et al., “Ordinary Meaning and Ordinary Peopl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71 No. 2(2023).

Marco Basile, “Ordinary Meaning and Plain Meaning”, *Virginia Law Review*, Vol. 110(2024).

Michael Herz, ““Data, Views, or Arguments”: A Ruminantion”,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Vol. 22 No.2(2013).

Robert M. Bernstein, “Abandoning the Use of Abstract Formulations in Interpreting Rluipa’s Substantial Burden Provision in Religious Land Use Cases”, *Th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Vol.36 No.2(2013).

Ryan Crockett, “Balancing Burdens for Accused Infringers: How In Re Seagate Got It Right”, *DePaul Law Review*, Vol.58 No.4(2009).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누3300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325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722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15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19가합5481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0가합6052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9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1가합5517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131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합5331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428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865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1가합5075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가합529273 판결.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Connecticut Nat. Bank v. Germain, 503 U.S. 249 (1992).

### 신문기사

정차호,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3배에서 5배로 강화」, 지식재산뉴스, 2024. 4. 23자.  
김성기,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 부산지법 2023가합42160 판결을 보고」, 지식재산뉴스, 2024. 5. 8자.

### 인터넷 자료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076&rowIdx=81](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076&rowIdx=81)>, 검색일: 2025. 3.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S7J1W1I1B3D1G4D3G5B4R1D9O6O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S7J1W1I1B3D1G4D3G5B4R1D9O6O6)>, 검색일: 2025. 3. 6.  
오세정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7D0E7P1V1A1B4M4L4L2K0O9N4V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7D0E7P1V1A1B4M4L4L2K0O9N4V7)>, 검색일: 2025. 3. 5.  
오제세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20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2H0A6Y0Q8I1Y1H3F1C3I2D1Z8T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2H0A6Y0Q8I1Y1H3F1C3I2D1Z8T6)>, 검색일: 2025. 3. 6.  
원혜영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Q7F0Q8W2C9M1E7O0N7S1V2I5N1M0](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Q7F0Q8W2C9M1E7O0N7S1V2I5N1M0)>, 검색일: 2025. 3. 5.  
위키백과, “제네시스”,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84%A4%EC%8B%9C%EC%8A%A4\\_G80](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84%A4%EC%8B%9C%EC%8A%A4_G80)>, 검색일: 2025. 3. 10.  
정무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201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I3K0Q4P0G9D1N8T0Z5W0O9X0J8Z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I3K0Q4P0G9D1N8T0Z5W0O9X0J8Z6)>, 검색일: 2025. 3. 6.  
진영의원 등 3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20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I2F0M5A3L0H1A0H2H3D1N9B8B3U2](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I2F0M5A3L0H1A0H2H3D1N9B8B3U2)>, 검색일: 2025. 3. 6.  
홍의락의원 등 10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D8E0U6G2U1N1W0F3N2J0V9W2M0T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D8E0U6G2U1N1W0F3N2J0V9W2M0T7)>, 검색일: 2025. 3. 6.

색일: 2025. 3. 5.

**기타 자료**

손영언, “2024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특허법학회, 2025.